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숭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70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김승수·신성범·김정재

권영세 • 이인선 • 이달희

김상훈 · 김예지 · 한지아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단체가되어 이를 관리·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유산청은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유산 보호시설, 전시관, 주차장 등 영구시설물 건립을 위한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등의 경우, 「국유재산법」상 국가 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단체로서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을 충분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리단체가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을 관리·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

호와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6조의2(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국유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체에 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관리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중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81조"를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81조"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u>제6</u> 설> <u>제6</u> 설 설> <u>설</u> 설 설 설 설 설 설 설 설 설 설 설 설 설 설 설 설 설 설
고 그 소 소 요 그 소 그 소 요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u></u> - <u>-</u> - <u>-</u> - <u>-</u> - <u>-</u> - <u>-</u>